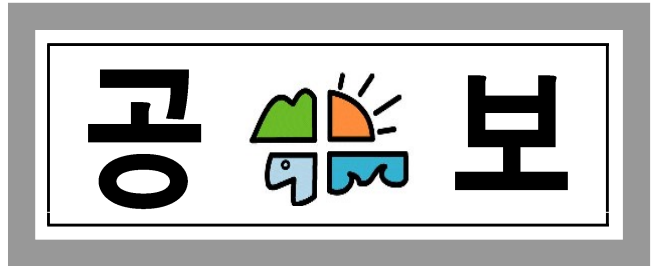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14호 2019년 6월 21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종합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2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5

공 고

-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 9

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종합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 종합운동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6월 18일

속 초 시 장

가.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: 아래조서 참조

나. 속초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■ 체육시설(운동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

가. 운동장 결정(변경)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종합운동장	운동장	속초시 노학동 1000-332일원	255,906	-	255,906	2004.8.21. (강원도 고시 제 2004-160호)	제

나. 운동장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종합운동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부시설 면적변경 - 파크골프장 기정 15,043㎡ ⇒ 변경 15,178㎡(증135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파크골프장을 일부 확장하고자 함.

다.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부지면적(㎡)			시 설 규 모 (㎡)						비 고
						건 축 면 적			건 축 연 면 적	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합 계			255,906	-	255,906	19,414	-26	19,388	29,044	-26	29,018	
체육 및 수련 시설	소 계						-26			-26		
	1. 종합운동장		54,240	-	54,240		-			-		
	2. 체육관및수련관		25,500	-	25,500		-			-		3층, 실내테니스장
	3. 궁도장		6,160	-	6,160		-			-		1층, 화장실 1개소
	4. 야구장		22,590	-	22,590		-			-		
	5. 잔디구장		40,691		40,573	440	-	440	440	-	440	
		5-1. 잔디구장1	11,870	-	11,870		-			-		파고라 4개소
		5-2. 잔디구장2	12,750	-	12,750		-			-		화장실·샤워장 1개소 120㎡
		5-3. 잔디구장3	9,270	-	9,270		-			-		화장실·샤워장 1개소 120㎡
		5-4. 잔디구장4	6,801		6,683		-			-		화장실·샤워장 1개소 120㎡
6. 테니스장		10,930	-	10,930		-			-		화장실·샤워장 1개소 120㎡	
7. 파크골프장		15,043	135	15,178	60	-26	34	60	-26	34	시설(18홀), 관리 사무소 1개소 화장실 1개소	
체육 및 수련 시설	8. 보조경기장		4,887	-	4,887	-	-	-	-	-	-	
		8-1. 육상보조경기장	3,030	-	3,030	-	-	-	-	-	-	
		8-2. 멀리뛰기보조경기장	1,857	-	1,857	-	-	-	-	-	-	
9. X게임장		1,470	-	1,470	-	-	-	-	-	-		
관리 시설	소 계		630	-	630	170	-	170	170	-	170	
	10. 변 전 소		630	-	630		-			-		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부지면적(㎡)			시 설 규 모 (㎡)			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건 축 면 적			건 축 연 면 적			
			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교통 시설	소 계		32,137	-17	32,120	430	-	430	430	-	430	
	11.도 로		10,247	-17	10,230	-	-	-	-	-	-	
		11-1.도 로1	5,880	-	5,880	-	-	-	-	-	-	
		11-2.도 로2	1,610	-	1,610	-	-	-	-	-	-	
		11-3.도 로3	1,045	-	1,045	-	-	-	-	-	-	
		11-4.도 로4	282	-17	265	-	-	-	-	-	-	
		11-5.도 로5	1,430	-	1,430	-	-	-	-	-	-	
	12.주차장		16,490	-	16,490							화장실1개소
		12-1.주차장1	5,970	-	5,970	-	-	-	-	-	-	
		12-2.주차장2	9,080	-	9,080							화장실1개소
		12-3.주차장2	1,440	-	1,440	-	-	-	-	-	-	
	13.교통광장		5,400	-	5,400							관광안내소1개소
		13-1.교통광장1	3,155	-	3,155	-	-	-	-	-	-	
		13-2.교통광장2	2,245	-	2,245							관광안내소1개소
녹지	14. 녹 지		41,628	-	41,628	95	-	95	95	-	95	화장실2개소
		14-1.녹 지1	13,440	-	13,440	-	-	-	-	-	-	
		14-2.녹 지2	8,300	-	8,300	-	-	-	-	-	-	
		14-3.녹 지3	9,190	-	9,190							화장실1개소25㎡
		14-4.녹 지4	2,532	-	2,532							화장실1개소
		14-5.녹 지5	8,166	-	8,166	-	-	-	-	-	-	

라. 운동장 세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①	종합 운동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치 : 노학동 1000-332일원 - 부지면적 변경(변경없음) (A=255,906㎡ → 255,906㎡) - 세부시설 변경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파크골프장 변경 (A=15,043㎡ → 15,178㎡/증135㎡) 나. 잔디구장4 변경 (A=6,801㎡ → 6,683㎡/감118㎡) 다. 도로4 변경 (A=282㎡ → 265㎡/감17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파크골프장을 일부 확장하고자 하며, ● 이에맞추어 미조성된 일부 세부시설을 조정하여 파크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함.

속초 도시관리계획(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고시 제2019-49호(2019.6.17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6월 20일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37	조양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-	증) 34,981	34,981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호	위 치	면 적(m ²)	결 정 사유
신설	37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34,981	·조양동 일원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고 주거기능 증진 및 미관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m ²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34,981	-	34,981	100.0	
주거지역	소계	34,019	-	34,019	97.3
	제2종일반주거지역	34,019	-	34,019	97.3
녹지지역	소계	962	-	962	2.7
	생산녹지지역	534	-	534	1.5
	자연녹지지역	428	-	428	1.2

▣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결 정 (변 경) 사 유
		기정	변경		
-	속초시 조양동 415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34,019	·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
		생산녹지지역	생산녹지지역	534	
		자연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428	

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3)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▣ 도로 총괄표

구분		계			1류			2류			3류		
	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계	기정	4	598 (2,059)	6,535 (23,941)	-	-	-	2	232 (307)	1,893 (2,966)	2	366 (1,752)	4,642 (20,975)
	변경	4	650 (2,109)	8,008 (25,706)	-	-	-	2	216 (289)	1,967 (3,034)	2	434 (1,820)	6,041 (22,672)
중로	기정	3	374 (1,835)	4,814 (22,220)	-	-	-	1	8 (83)	172 (1,245)	2	366 (1,752)	4,642 (20,975)
	변경	3	440 (1,899)	6,159 (23,857)	-	-	-	1	6 (79)	118 (1,185)	2	434 (1,820)	6,041 (22,672)
소로	기정	1	224	1,721	-	-	-	1	224	1,721	-	-	-
	변경	1	210	1,805	-	-	-	1	210	1,805	-	-	-

※ 1) () 안 숫자는 중로 2-25호선과 중로 3-33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

2) 중로 2-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-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79m 중 6m / 총 면적 1,185㎡ 중 118㎡)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3) 중로 3-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1,510m 중 124m / 총 면적 18,438㎡ 중 1,807㎡)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조성하고자 함

▣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기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25	15	보조 간선도로	8 (83)	조양69전 중로3-6	조양79도 대로3-1	일반 도로	청초천	2007. 11. 2 (강고 제2007-236호)	연장 축소
변경	중로	2	25	15	보조 간선도로	6 (79)	조양69전 중로3-6	조양79도 대로3-1	일반 도로	청초천		
기정	중로	3	6	12~15	보조 간선도로	124 (1,510)	조양547-2도 중로1-8	노학1268도 중로1-23	일반 도로	청초천	1976. 3. 27 (건고 제37호)	일부 구간
변경	중로	3	6	12~15	보조 간선도로	124 (1,510)	조양547-2도 중로1-8	노학1268도 중로1-23	일반 도로	청초천		폭원 확대
기정	중로	3	33	12	보조 간선도로	242	조양420-40구 소로2-71	조양400-5도 중로3-6	일반 도로	속초상업 고등학교	1992. 10. 9 (강고 제92-113호)	연장 및 폭원 확대
변경	중로	3	33	12~18	보조 간선도로	310	조양387-2임 소로2-231	조양400-5도 중로3-6	일반 도로	속초상업 고등학교		
폐지	소로	2	71	8	국지도로	224	조양508-8구 소로1-21	조양427-1과 중로3-33	일반 도로		1976. 3. 27 (건고 제37호)	
신설	소로	2	231	8.5	국지도로	210	조양460-1도 소로1-21	조양387-2임 중로3-33	일반 도로			

※ 연장의 ()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이며 변경내용의 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만 명기함

▣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변경	중로 2-25	중로 2-25	·연장 축소 - 금회 포함 연장 : 6m - 금회 포함 면적 : 118㎡ ·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83m → 79m(감 4m) - 폭원 : 15m 변경없음 - 면적 : 1,245㎡ → 1,185㎡ (감 60㎡)	·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중로 3-6호선 차선 체계에 변경이 발생하여 폭원이 확대되어 중로 2-25호선 도로 연장 축소 ·전체 연장 79m 중 금회 변경이 발생하는 6m에 대하여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변경	중로 3-6	중로 3-6	·일부 구간 폭원 확폭 - 금회 포함 연장 : 124m - 금회 포함 면적 : 1,807㎡ ·전체 도로 제원 - 연장 : 1,510m 변경없음 - 폭원 : 12~15m 변경없음 - 면적 : 18,140㎡ → 18,438㎡ (증 298㎡)	·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차선체계에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 폭원 확대 ·전체 연장 1,510m 중 금회 변경이 발생하는 124m에 대하여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
변경	중로 3-33	중로 3-33	·연장 확대 및 폭원 확폭 - 연장 : 242m → 310m(증 68m) - 폭원 : 12m → 12~18m - 면적 : 2,835㎡ → 4,234㎡ (증 1,399㎡)	·대상지 진출입 차량 이용 및 연결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대상지 내 도로 연장확대 및 공동주택 진입구간 폭원 확폭
폐지	소로 2-71		·폐지	·공동주택건립에 따른 대상지 내 노선 폐지
신설		소로 2-231	·노선 신설 - 연장 : 210m - 폭원 : 8.5m - 면적 : 1,849㎡	·공동주택건립에 의한 대상지 내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도로 신설

- ※ 1) 중로 2-25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3-6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79m 중 6m / 총 면적 1,185㎡ 중 118㎡)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- 2) 중로 3-6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(총 연장 1,510m 중 124m / 총 면적 18,438㎡ 중 1,807㎡)만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조성하고자 함
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
가구번호와 동일	A1	26,973	조양동 415번지 일원	26,973	공동주택용지

5)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분	결정내용	비 고	
-	A1	용도	허용	·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시설	
			불허	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건 폐 율	·60% 이하		
		용 적 륜	·250% 이하		
		높 이	·30층 이하		
		배 치	·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		
		형 태			
		색 채			
		건 축 선	·건축한계선 - 공동주택 :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※ 부대복리시설 제외	결정도 참조	

6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보행동선	단지 내 보행동선	·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
차량동선 및 주차	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	·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·출입 불허
	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	·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

- ※ “차량출입불허구간”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
- ※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
 - 버스정류장, 기타 승하차시설, 횡단보도 전후 10m 구간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

공 고

「속초시 공인 조례」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6월 21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재등록 사유

— 속초시철압인 마모에 따른 공인 재등록

2. 공인명 및 인영 : 재등록 1개, 폐기 1개

구분	공 인 명	인영	규격	사용일 또는 폐기일 (최초사용일)	비고
재등록	속초시철압인		지름 3.5cm	2019. 6. 21.	
폐기	속초시철압인		지름 3.0cm	2019. 6. 21. (2002. 8. 19.)	